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3. 9월 시행되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현재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내용이 있어, 동작구 출산가정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완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2개월”을 “6개월”로,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제2항 중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를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 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6.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u>12개월</u>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u>동작구</u>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3조(지원대상) ① ----- ----- <u>6개월</u> ----- ----- <u>동작구</u> ----- <u>구(이하 “동작구”라 한다)</u>----- ----- ----- ----- ----- ----- -----.</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u>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u></p>
<p>제4조(지원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p>	<p>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
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